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1 - 2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5노139 사기, 무고
피 고 인 황문식 (591103-1○○○○○○○), 자영업
주거 고양시 ○○구 ○○로○○○번길 ○○, ○○○호 (○○동)
등록기준지 충북 ○○군 ○○면 ○○로 ○○○
항 소 인 검사
검 사 임○○(기소), 김○○(공판)
변 호 인 법무법인 조○ 담당변호사 김○○
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8. 선고 2023고단10377 판결
판 결 선 고 2025. 9. 23.

주 문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피고인은 2020. 12. 28. 장○○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인천항만

공사의 항만부지 입찰보증금이 약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그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에 입찰보증금 450만 원을 납부하고 위 항만부지의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로 유찰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 입찰보증금으로 8,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.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, 따라서 피고인은 장○○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, 나아가 피고인이 장○○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의 고소로 무고에 해당한다.

2. 판단

가. 공소사실의 요지

1) 사기

피고인은 장○○(2022. 7. 29.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)과 동업으로 인천 중구 ○○○○로 ○○에서 ‘○○수산’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20. 12. 28.경 인천 연수구 ○○동 ○○○타워 ○○층에 있는 황○○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○○과 함께 피해자 강○에게 ‘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를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8,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,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갚을 수 있다, 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이○○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, 이○○는 집안 사람이며 위임을 받았다’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.

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장○○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, 피고인과 장○○은 이미 2020. 10. 7.

경 인천 중구 향동7가 ○○-○ 소재 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의 임대에 대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자격미달 등을 이유로 유찰되었고,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입찰 조건에 따르면 위 항만부지의 입찰최저가격은 88,020,350원 상당이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% 상당만 납부하면 되므로 8,000만 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, 장○○은 이○○로부터 이○○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.

피고인은 장○○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○○수산 농협 계좌(352-○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)로 7,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.

2) 무고

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2021. 4.경 강○○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장○○과 함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, 위 사기 사건의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도 장○○에게 속아 강○○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장○○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.

피고인은 2021. 10. 19.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 장○○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“피고소인 장○○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임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(피고인)에게 ‘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임대 입찰에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. 그곳 냉동보관창고 건설을 위한 시설비 명목으로 인천항만공사에 입금할 8,000만 원을 강○○으로부터 빌리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차용해 달라. 차용금은 한 달 내로 갚을 것이다’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

소인으로 하여금 2020. 12. 28.경 강○에게 8,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¹⁾하게 하였다.”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, 2021. 10. 28.경 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.

그러나 사실 피고인 역시 항만부지 임대를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강○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장○○과 함께 나누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, 피고인은 장○○과 공모하여 강○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었지 장○○에게 속아서 강○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장○○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.

나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이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도 장○○에게 기망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거나, 피고인이 장○○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의 고소로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.

다. 당심의 판단

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‘○○○○사’라는 상호

1) 강○이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○○수산 농협 계좌로 송금한 액수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약정에 따른 8,000만 원에서 5%의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7,600만 원이다.

로 인쇄출판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, 수산업은 물론 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 임대 입찰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실제 피고인은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시설자금과 입찰보증금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진술하였는바(증거기록 1권 제75쪽 참조), 이는 단지 피고인이 장○○으로부터 ○○수산 운영에 냉동창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만 전해 듣고 이에 대한 필요자금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은 서로 협의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, 다만 막연히 입찰보증금이나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 내지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장○○은 2020. 10. 7. ○○수산 직원 탁○○을 통하여 ‘인천 중구 향동7 가 ○○-○’ 소재 인천항만공사 항만부지에 입찰하였고, 같은 날 입찰보증금 450만 원을 ‘온비드’에 납부하였다가,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유찰(입찰 무효)되어 2020. 10. 8. 위 450만 원을 장○○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(증거기록 4권 제205쪽 참조), 장○○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‘최○○ 돈 1억 500만 원을 넣었다’라고 말하는 등(증거기록 2권 제40쪽) 입찰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점, ④ 또한 장○○은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으로 450만 원을 납입하였다가 유찰로 인하여 다시 450만 원을 돌려받았고, 위와 같이 입찰한 것 이외에 다시 입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‘그 당시에 항만청에서 9,500만 원 수표 들어왔다’, ‘이 돈이 나와 갖고 다시 넣은 것이 보이스피싱이었다’라고 말하며(증거기록 2권 제49쪽) 계속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특히 장○○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,600만 원 중 5,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²⁾하였음에도, 피고인이 장○○에게 항만청에 5,6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자 ‘배

2) 당시 탁○○은 장○○의 지시로 적요란에 ‘항만공사’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금원을 이체하였다(증거기록 1권 제87쪽 참조).

○○과 탁○○이 임의로 사용하였다. 피고인이 배○○과 탁○○을 고소해야 한다’는 취지로 말하며(증거기록 2권 제40쪽, 제42쪽, 제45쪽 등 참조)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 용도나 재입찰하기로 한 입찰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기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도 장○○에게 기망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거나, 피고인이 장○○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의 고소로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,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○○ _____

 판사 장○○ _____

 판사 이○○ _____